

추가시험 실시에 대한 안내



2022.12.13.제정, 2025.3.1.개정시행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박병도 교수 (043-261-2721)

I 관련근거

- 『충북대학교 학칙』제68조(시험)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81조(추가시험 절차)

Ⅱ 규정해설

□ 학칙 제68조

- (추가시험 대상)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학기말시험) 또는 임시시험(학기말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
- (규정사항)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 실시. 여기서 10일은 『행정기본 법』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을 따라 계산함

□ 학사운영규정 제81조

- (학생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소속대학장에게 추가시험인정원(서식 제15호) 제출
- **(소속 단과대학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추가시험인정원을 검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
- (담당교수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성적입력기간 내에 추가시험 실시.

III 학생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및 유의사항

□ 이행사항 제1호: 공결신청 및 추가시험인정원 동시제출

추가시험인정원은 소속학과 조교를 통해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학과사무실로 문의할 것

- 이행사항 제1호를 완료하기 전에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지 말 것. 이 단계에서 담당교수가 관여할 수 있는 규정근거가 없음
- 소속 학과 사무실에서 추가시험인정원 처리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였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으로 아래 이행사 항 제2호를 이행할 것

□ 이행사항 제2호: 담당교수에게 이메일을 작성

- (공결신청과 추가시험인정원 모두를 접수 완료한 경우) 다음 세 가지 내용 을 포함하여 담당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
 - 가. 공결신청과 추가시험인정원 모두를 접수 완료하였다는 진술
 - 나. 수업이 있는 요일 및 교시
 - 다. 평일 09-12시 또는 13-18시 사이 중에서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의 기간 중 추가시험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일시 3개(우선순위로 열거)
- 담당교수는 이 단계에서 추가시험 문제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며, 추가시험 인정원 공문을 전달받은 즉시 추가시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전화로 알리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이메일로 통보함
- 추가시험인정원 제출은 완료되었으나, 승인 및 통보가 지체되는 경우 담당 교수가 해당 학과 사무실 및 단과대학에 처리 상황을 확인하므로, 추가시 험인정원 제출 즉시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 (공결신청이나 추가시험인정원이 불인정된 경우 등) 담당교수는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의 공결 또는 추가시험인정원 취급이 공정하고 규정 대비 정확한지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여학생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다음 내용으로 담당교수에게 이메일을 작성하여 진행 상황을 즉시 보고할 것
 - 가. 신청을 불인정한 주체 및 담당자(예: 〇〇학과 조교 〇〇〇, 〇〇대학 행정실 학사주무관 〇〇〇)
 - 나. 신청한 내용(예: 증빙서류인 진료확인서를 지참하여 학기말시험 추가 시험인정원을 제출)
 - 다. 위 가목의 불인정 주체가 불인정한 사유(사실 그대로 상세히 작성)

□ 유의사항

- 소속 학과 조교가 추가시험인정원 관련 행정사항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고, 담당교수 통보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추가시험인정원 승인 및 통보가 늦어지면 추가시험을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 따라서 <u>학생이 학</u> 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추가시험인정원 처리 상황을 챙겨야 함
- 소속 학과 조교가 추가시험인정원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 이 문건을 제시할 것. 담당교수는 어떤 경우에도 소속 단과대학장 명의의 추가시험인정원 승인 공문 없이 추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추가시험을 보고 싶다면 추가시험인정원 승인을 받고,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이에 대한 대내시행 공문서를 사범대학장 앞으로 발송토록 요청할 것
 - ※ 추가시험인정원 승인 공문 또는 붙임문서에 다음 시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인정
 - 학년도 및 학기
 - 교과목명
 - 담당교수 성명
 - 원시험일시
- 시험 종료 후 10일이 성적 입력 마감시한 이후일 경우, 추가시험의 성적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추가시험과 관련한 성적입력이 모 두 가능한 일시에 추가시험 실시함. 만약 <u>추가시험인정원이 담당교</u> 수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성적입력 마감 시점사이의 시간이 촉 박하여 추가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성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시험 실시 없이 결시처리 할 수 있음.

추 가 시 험 인 정 원

대학	학과(부)	학년	반
학번 :		성명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기시험(기말)에 응시할 수 없이 별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 인정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관련서류 첨부) :

년도	학기	교과목	담당 교수	시험 일시	년도	학기	교 과 목	담당 교수	시험 일시

20 년 월 일

위 사실을 승인함.

결	계	주 무	교학담당 부 학 장	학 장	신 청 인 지도교수	(1) (1)
재					20 년 월 일	

학장 귀하